

II.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12월 18일(파주시장)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1996년 12월 21일 【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】

상정, 제안설명

1996년 12월 23일 【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】

상정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

1996년 12월 24일 【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】

의 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산업국장 조철호)

가. 제안이유

-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연기승인의 건을 심의의결 요구함.

나. 주요골자

- 적성면 가월리 권영식외 4인은 '92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융자금 6천 만원을 융자받아 화훼 관엽(남산금, 소판금)을 재배하던 중 '96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약 8천만원의 손해를 입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납기일 '96. 12. 31 ~ 2000. 12. 31까지 인 것을 각 1년씩 상환기일을 연기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(전문위원 : 박헌재)

- 본 건은 파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,
- 동조례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융자금 상환연기 사유발생시 상환연기 조치는 파주시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 자체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발효된 것으로서 별도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, 관련조항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질)조례 16조 제1항에 규정된 융자금 상환연기 사유발생시 상환연기 조치는 파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자체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발효된 것으로 별도로 시의회 승인을 받지않아도 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관련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지?

답)검토하지 못했으므로 차후 현실정에 맞도록 검토하여 개정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집행기관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